



# 만약에 50% 부과된다면?

## —축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이 영 래

<농수산부 축산과 기획계장>

### ● 목 차 ●

1. 서 론
2. 축산업에 대한 면세상황
3. 축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 가 중간예납
  - 나 장부비치 및 기록의무
  - 다 원천징수
4. 앞으로 축산업자가 할 일

### 1. 서 론

60년대의 우리나라 축산업은 일반농업에 종속된 소규모 영세적인 농가부업경영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소득의 향상과 식생활구조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날로 늘어나는 육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어도 축산물만은 국내자급이 가능하도록 축산진흥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축산업에 투자하는 축산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영업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각각 면세토록 하였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액 감면기간이 75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였으나 연장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76년부터 50%를 과세함에 따라 축산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축산업에 대한 면세상황

정부는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데, 축산업에 대한 면세종류는 7가지로서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종합 소득세의 면세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의 6 (축산업에 대한 종합 소득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축산법인이 아래 시설규모의 축산업 투자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0년 이내에 전체 계획기간(분할계획으로 2년씩 구분하여 투자할 수 있음)으로 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를 면제토록 하였는데, 현재 조성하고 있는 대단위 목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면세를 위한 축산업 투자시설 및 규모

| 사업종별   | 구분       |                         | 초지 또는 사료포 |          |
|--------|----------|-------------------------|-----------|----------|
|        | 가 축 (두수) | 축 사 ((m <sup>2</sup> )) | 초 지 (ha)  | 사료포 (ha) |
| 한우목장사업 | 1,000    | 4,950                   | 500       | 250      |
| 육우 "   | 1,000    | 4,950                   | 500       | 250      |
| 유우 "   | 1,000    | 8,250                   | 500       | 250      |
| 산양 "   | 10,000   | 8,250                   | 500       | 250      |
| 면양 "   | 10,000   | 8,250                   | 500       | 250      |

**나. 재산세의 면세**

조세감면규제법 제 4조(재산세의 면제)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면제를 받도록 하였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아래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동 요건을 날로부터 5년내에 목장용 토지 또는 그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하는 때(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 받게 된다.

**다. 취득세의 면세**

조세감면규제법 제 10조(취득세의 면제) 제 2항 규정에 의거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받도록 하였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아래 기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용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부분에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이용 상한선**  
(재산세 및 취득세의 면세 범위)

| 구 분    | 사업별  | 가축두수  | 축사 및 부대 시설 |       |     | 초 지 |
|--------|------|-------|------------|-------|-----|-----|
|        |      |       | 축사         | 부대 시설 | 부지  |     |
| 한우(육우) | 사육사업 | 1두당   | 1.5        | 0.5   | 10  | 1ha |
| 한우(육우) | 비육사업 | 1 "   | 1.5        | 0.5   | 10  | 0.2 |
| 유우     | 목장사업 | 1 "   | 2.5        | 0.5   | 10  | 1   |
| 양      | "    | 10 "  | 5          | 2     | 50  | 1   |
| 돼지     | 양돈사업 | 5 "   | 10         | 4     | 25  | —   |
| 가금     | 양계사업 | 100수당 | 10         | 5     | 50  | —   |
| 사슴     | 목장사업 | 10두당  | 20         | 5     | 50  | —   |
| 토끼     | 사육사업 | 100수당 | 10         | 2     | 100 | 0.2 |
| 밍크     | "    | 5 "   | 2          | 2     | 10  | —   |

대하여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즉시 추징 받게 된다.

**라. 영업세의 면세**

영업세법 제 9조(비과세 영업)제 4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자가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영업세법 시행령 제 2조(영업 아닌 사업의 범위) 제 2호에 축산업은 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배제하였다.

**마. 양도 소득세의 면세**

소득세법 제 6조(세액의 감면)제 2항 제 3호 및 동시행령 제 19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등 토지 및 건물)의 규정에 의거 아래 기준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갖추고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므로써 축산업의 진흥화와 지속적인 운영으로 축산진흥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범위**

| 사 업 별                       | 사육성축두수 | 면 세 범 위                |
|-----------------------------|--------|------------------------|
| 한우·육용우 사육사업                 | 20두    | 두당 1,150m <sup>2</sup> |
| 유우 사육사업                     | 20두    | " 2,300 "              |
| 양·사슴 사육사업                   | 200두   | " 230 "                |
| 돼지 사육사업                     | 100두   | " 13 "                 |
| 토끼(친칠라 및 밍크를 포함한다) 사육사업     | 500수   | 수당 3 "                 |
| 가금 사육사업(중계장에 설치된 부화장을 포함한다) | 1,000  | " 3 "                  |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은 위에 계기된 토지면적 이상의 신목장 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구목장의 양도 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기준이상의 신목장 부지를 확보한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비과세 소득)의 규정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도록 하였다.

#### 바. 소득세의 면세

소득세법 제 6 조(세액의 감면)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금액에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해와 그 다음년도부터 6년간은 세액의 100% 그후 3년간을 50%를 면제받도록 하였으며 부칙 3 조(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의 규정에 의거 축산업 개시기간은 실제 개시일자를 불문하고 1969년 1월 1일에 축산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 사. 법인세의 면세

법인세법 제24조의 2(축산업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소득세의 면세규정과 같이 그 사업을 개시한 년도와 그 익년도부터 6년간은 법인세의 전액(100%)을, 그후 3년간은 반액(50%)의 세액을 각각 감면받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개시일자는 1969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축산업의 소득세및 법인세 면세기간

| 구 분        | 면 세 기 간                                 |
|------------|---|
| 전액면제(100%) | 사업을 개시한해와 그 익년도부터 6년간<br>(69~75년 : 7년간) |
| 반액면제(50%)  | 2후 3년간<br>(76~78년 : 3년간)                |
| 계          | 10년간 감면                                 |

### 3. 축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축산업은 1969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농업으로 인정하여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축산장려정책에 힘입어 축산업이 전업내지 기업형태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소득세법 제 5 조(비과세 소득)제

2호의 규정에는 전답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축산업은 전답이 아닌 초지나 기타 토지 위에서 영위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속하게 되어 1969년에 소득세법(제 6 조 제 3 항)과 법인세법(제24조의 2)에 축산업에 대하여는 각각 감면케하여 법적인 보장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축산업에 대한 전액(100%) 감면기간이 75년말 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76년부터는 50%만 감면이 되며 50%는 과세토록 되었다.

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소득의 과세는 원칙적으로 해당년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익년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일시에 세금을 내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중하므로 조세당국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당해년도에 중간예납, 원천징수등으로 세금을 세분하여 납부케하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가 76년부터 과세됨에 따라 축산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과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의문사항에 대한 재무부측과 협의한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중간예납

소득세법 제83조 (중간예납)와 법인세법 제 30조(중간예납)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 예납기간을 제 1 기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 2 기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는 당해년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중간예납세액을 추계하여 제 1 기분은 9월 30일까지, 제 2 기분은 12월 31일까지 정부(주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간 예납세액(추계액)의 50%를 자진납부 전년도에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제1 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 2 기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고지서를 통지하게 되며,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추계하

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중간예납 추계액의 계산은 제 1기분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3을 곱하여 연간소득으로 추계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를 하고 소득세법 제70조(세율)의 규정에 의거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세액을 다시 3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 1기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제 2기분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8분의 12를 곱하여 연간소득으로 추계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다시 12분의 8을 곱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 2기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축산업은 75년까지 100% 면제 되었으나 76년부터 50%가 과세되기 때문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76년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산출하여 해당기일까지 50%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2) 중간예납 미이행시에도 법적 제재규정은 없음**

축산업자가 소득세법 제106조(세액감면신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와 법인세등 조세감면을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재무부측 견해는 축산업은 75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어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부될 리가 없으며 축산업자가 자진하여 중간예납세액(추계액입)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등 법적인 제재규정은 없고 국세청에서 조사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만 익년도에 일지에 납부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과중해지는 단점이 있을 것이다.

**나. 장부비치 및 기록의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 신고)와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다음년도 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 결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이외에 실지조사 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이 있다.

**(1)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음.**

사업소득자는 소득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간이장부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부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거나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게 된다.

**(2)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 않을때는 가산비가 부과됨.**

사업소득자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4조(장부비치·기록의무)와 법인세법 제62조(장부의 비치·기장)의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종으로 대차평균하게 기록하는 부기형식에 의한 장부를 말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월 판매보고서와 지급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 이외의 자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간이장부의무자로서 간이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간이 장부는 현금출납장, 매출장 또는 수입장, 매입장, 경비장등을 기장하는 장부를 말한다.

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장부를 비치, 기장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다음 달 1일부터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인 때에

는 일기장의무자로서 일기장을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일기장은 현금출납과 외상매출, 매입과 경비에 관한 사항을 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식부기 및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을 때에는 기장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3) 간이 및 일기장 의무자가 기장 비치시 세액의 10/100을 공제**

간이 및 일기장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3조(기장세액공제)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기장세액공제) 받게 된다.

**(4) 소규모 양축가는 부업소득의 범위에 넣어 면세토록 추진**

이와같이 장부를 비치, 기장할 경우에 영세한 양축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경영 규모하에서는 사실상 기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영세 양축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국제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경제계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득표준을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업종별 소득표준을 적용하는 추계 조사에 의하여 결정되며 축산업은 업종별로 생산량과 시가가 그때마다 다르므로 일반 상품과 같이 인정과세로 사육두수등에 따라 부과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34조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과금지) 및 동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가에서 축산, 양잠, 가공품등 부업소득으로 연간 18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 되도록 하였으나 그 이상의 농가도 사실상 부업규모에 소규모 양축가는 전부 부업소득의 범위에 넣어 실질적으로 면세를 받게하도록 재무부와 절충중에 있으며 축산업에 대한 부업규모의 범위가 확정되면 추후 소개하고자 한다.

**다. 원천징수**

물품을 매매할 때 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이 발생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원천징수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원천징수
  - 일반원천징수...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소득  
갑종근로소득, 기타소득  
갑종퇴직소득 발생시 원천징수
  - 거래원천징수...물품을 판매 인도하는 때와 용역대금(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 법정원천징수...국가 지방자치 단체  
농수협 도매시장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등이 물품매매시 원천징수
  - 특별원천징수...수입업자, 수입위탁자, 도축장경영자등이 물품매매시 원천징수

**(1) 일반 및 거래 원천징수 의무자의 범위**

일반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일반원천징수의무)와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이자소득, 근로소득등을 지급하는 자가 되고 거래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제169조(거래원천징수의무)와 법인세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원천징수의무자로 구분되며 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협, 도매시장법인,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등이며 특별원천징수의무자는 공연장 경영자,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입업자, 수입위탁자, 도축장경영자와 부동산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법인이 된다.

일반 또는 거래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축산업은 사업소득으로서 일반원천징수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래원천징수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법정원천징수

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는 때와 물품대금 또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물품대금 인도가액 또는 용역 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축산업은 75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액 면제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79조(거래원천징수의 면제)와 법인세법 제40조(원천징수의 면제의 규정)에 의거 거래원천징수도 면제였으나 76년부터는 50%가 과세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법정원천징수의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용역 또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물품대금 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거래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규정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법정원천징수의 면제)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법정원천징수의 의무자지정)의 규정으로 법정원천징수를 면제토록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기관 농협이 사료, 가축 및 축산물을 판매시에는 원천징수를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협이 가축(법축산상의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과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중 수육과 그 부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판매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나 이번 시행령개정시 사료도 본규정에 따라 법정원천징수를 면제되도록 추가하였다.

본문과 세부사항에 농협이 이중으로 원천징수를 면제되도록 열거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료, 가축과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법해석상 원천징수하여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항에 명시된 농협을 삭제하여 축산물 판매시의 원천징수 면제의 범위를 본 규정에 명백히 하였다.

(나)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축산업자에게 가축을 매입시 원천 징수를 면제

신설조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협,

도매시장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등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축산업자로 부터 가축(축산법상의 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과 축산물(축산물 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을 말한다)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금번시행령 개정시 추가하였으며 축산업자가 수육을 직접 군남, 판남하거나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수육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축산물중 수육과 부산물을 제외하지 않고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전 축산물을 대상으로 면제되도록 시행령을 개정보완 하였다.

(다) 농협이 조합원에게 매매한 물품은 원천징수를 면제

농협이 그 조합원에게 판매한 물품(수입물품을 제외한다)의 대금(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입한 물품을 포함)과 그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매입하고 지급하는 물품의 대금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이 직접 경영하는 농업협동조합원채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금액도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의 농업협동조합원은 농협법상 단위농협은 농민으로 구성되고 군농협은 15개이상의 단위농협으로 구성되거나 군농협(축협)이 단위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합원에게 가축과 축산물, 사료등 구판사업을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의 연합체로 인정되어 면제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축산업자에게 물품을 매매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하였으나 도매시장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등은 가축과 축산물 사료 판매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알선 행위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수육과 그부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축산업자가 아닌 식육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면제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3) 특별원천 징수

수입업자, 수입위탁자, 도축장경영자등 특별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거래에 있어 물품대금·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축산업자가 가축 축산 기자재 수입시 원천징수가 면제됨

수입업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수입물품을 판매하거나 분배, 교환, 지급하는 때에는 특별원천징수를 하게되나 축산업자가 직접가축, 축산기자재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업자 또는 수입위탁자에게 가축, 축산기자재등을 수입케 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9조(거래원천징수의 면제)제2항및 동시행령 제217조(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와 법인세법 제40조(원천징수의 면제)제2항및 동시행령 제107조(실수요자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의 규정에 의거 매입자가 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물품과 최종 축산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원천 징수가 면제되므로 축산업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아 거래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조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각 축산업자로 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아 이를 일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축산업자가 가축을 도축장에서 도살하여 직접 판매시 원천징수를 면제

식품상인, 우상인등이 도축장에서 가축을 도살, 판매할 경우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인 도축장경영자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나 축산업자가 직접 자가사육가축을 도축장(도매시장 도계장포함)에서 도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2조를 개정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조치하였다.

#### 4. 앞으로 축산업자가 할일

복식부기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와 일기장의무자로서의 축산업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농면을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득을 구분, 기장하고 매년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므로써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

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액감면기간이 7년으로 단료되고 76년에는 50%가 과세됨에 따라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축산업자는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으로 때로는 부당하게 많은 세액을 부과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모든 축산업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수지 상황을 성실하게 기장하므로써 공정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면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세액을 조사, 결정하므로 양측자에게 유리하며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세금도 내지 않게 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세액의 100분의 10을 기장세액으로 공제받는 혜택도 받게될 것이다.

#### 나. 축산업도 건전한 운영으로 경영을 합리화 시켜야 할것이다.

축산업자가 하여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경영의 합리화로서 장부를 비치, 수지상황을 기장하여 필요없는 경비는 최대한 억제 또는 절감하고 국내사료자원을 개발하여 사료의 자급화를 기하여야 할것이다.

흔히 우리나라의 농촌은 젖소 5두 이상만 사육하여도 목부를 두거나 주인이 없는 위탁양축을 하는 예가 많은데 하루빨리 축산업자가 자기의 가축을 자기스스로 사육하여 소기의 성과는 거양토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